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2월 일
- 회부일자 : 1999년 2월 일

3. 제안이유

현행 불법 주·정차 견인료 20,000원(2.5톤미만 차량기준)은 '91년 조례 개정 당시 금액으로 그동안 제반 소요비용은 상승한데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고, 견인차량 보관료가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견인차량의 장기간 방치시 대책이 없어, 견인 및 보관료를 현실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코자 함.

4. 주요골자

가. 견인료 인상 (안 제3조 제2항)

- 2.5톤 미만 “20,000원”을 “30,000원”으로
-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을 “35,000원”으로
- 6.5톤 이상 “40,000원”을 “50,000원”으로

나. 보관료 현실화 (안 제3조 제2항)

-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 (시간대 적용)을 적용하되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

다.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 정비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면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가 '91년 조례개정 당시 금액으로 제반비용 상승 감안시 불합리하므로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실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첫째, 견인료에 있어 (안 제3조 제2항)

- 2.5톤 미만 “20,000원”을 “30,000원”으로
-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을 “35,000원”으로
- 6.5톤 이상 “40,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료에 있어 (안 제3조 제2항)

- 현행 견인차량 보관료가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 (시간대 적용)을 적용하되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토록 함.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를 현실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